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12. 22.(수) 14:33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4시 33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의결안건> 3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비공개 안건인 <의결안건 가>를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나. 방송국 허가사항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1-57-181)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방송국 허가사항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허가범위를 벗어나 방송국을 운용하여 전파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사단법인 영주에프엠방송에 대해 <1안> 과징금 751만 5,000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2안>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허가증에 기재된 송신소 설치장소 및 안테나 형식과 다르게 FM방송국을 운영하여 방송국 허가사항을 위반한 사단법인 영주에프엠방송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처분 대상 방송국 현황과 주요 경과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전파법 위반사항입니다. 전파법 제25조에 따라 방송사는 허가증 기재 범위 내에서 방송국을 운영하여야 하나, (사)영주에프엠방송은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송신소를 이전하고 안테나 형식을 변경하여 방송국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피심인 의견(요약)입니다. 도시확장으로 신축건물이 증가하여 난청지역이 확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송신소 이전을 추진하였음. 방송중단 없이 송신소를 이전하였으며, 관련 법률 해석 오류로 인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행정처분(안)입니다. <1안>은 허가 없이 송신소의 위치와 안테나 형식을 변경한 것은 위반사항이 중대하므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되, 최초 위반인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은 2분의 1을 감경하고, 과태료는 기준금액을 부과하는 안입니다. 과징금은 기준금액 1,503만원의 2분의 1을 감경한 751만 5,000원이고, 과태료는 기준금액 100만원입니다. <2안>은 허가 없이 송신소의 위치와 안테나 형식을 변경한 것은 위반사항이 중대하나, 해당 위반이 처음이고 비영리 사업자임을 고려하여 과태료만 부과하되, 범위반정도 및 범위반 상태의 기간을 감안하여 과태료의 2분의 1을 가중한 150만원을 부과하는 안입니다. <붙임>으로 사업자 제출 의견과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 사안은 황당한 경우입니다. 전파 혼신이나 전파 환경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선국 허가장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피심인의 의견을 보면 시민들이 난청지역이 생겨서 그에 대한 불만과 함께 방송국 시정요구사항이 발생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준수에 대한 책임이 큼니다. 다만, 이번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이 방송국이 영세한 소규모 비영리 방송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2안>으로 과태료 부과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2안에 찬성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허가 당시 명시된 송신소 위치와 안테나 형식은 전파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방송국을 포함한 모든 무선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서 영주에프엠방송의 이번 위반사항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 비록 피심인이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이긴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는 <1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1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영주에프엠방송은 영주시민을 위한 지역밀착방송이자 비영리 풀뿌리 방송으로 2009년에 허가를 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입니다. 해당 법인은 허가 이후 지금까지 원만히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에 송신소 무단 변경 등에 따른 전파법 위반이 확인되어서 오늘 이렇게 범위반 사업자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허가 없이 송신소 장소를 임의로 옮기고 안테나 형식을 변경하는 등 범위반사항이 중하여 소규모 방송사로서 실수나 무지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해도 그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이 최초 위반이며, 비영리 사업자라는 점 그리고 공동체라디오의 영세성, 공공성과 함께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행정처분(안) 중 <2안>인 과태료 150만원 부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에프엠방송에서는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앞으로 위반사례가 없도록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영주에프엠방송은 2005년 시범방송으로 개국한 이래 수차례 재허가를 받아왔는데 허가 기간이나 법률 해석을 오해했다는 것은 정상참작의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는 <1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1안>에 동의하는 의견과 <2안>에 동의하는 의견이 두 분과 두 분으로 동일합니다. 저도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공동체라디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출력라디오이고 수신 지역과 출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송신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신지역이 바뀌게 되고, 그럼으로써 애초 가정지역이었던 지역이 난청지역이 될 수도 있고 청취지역이 아니었던 지역이 청취 가정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생겨 저희들이 허가하는 본질적인 내용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저도 최초 위반이긴 하나 중대성에 비추어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는 <1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분의 위원님들 중 <1안>에 동의하는 의견이 3인 그리고 <2안>에 동의하는 의견이 2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건은 사무처에서 제시한 행정처분(안) 중 <1안>인 과징금 751만 5,000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병과하는 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내용이라는 것을 사무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사무처에서 제시한 안 중 <1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 쿠팡 주식회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1-57-182)**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다> “쿠팡 주식회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쿠팡 주식회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쿠팡 주식회사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명한다. 과다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하여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자사 홈페이지 또는 전용앱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휴업일을 포함하여 4일간 공표할 것.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배경

및 추진경과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실조사결과입니다. 조사대상 및 기간입니다. 쿠팡(주)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협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유치를 시작한 2020년 7월 15일 ~ 2021년 8월 31일까지로 조사대상 기간으로 선정하고, 동 기간에 유치한 전체 가입건수 9,936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사항입니다. 쿠팡(주)은 전체 가입자 9,936건 중 4,362건에게 과다 지원금을 쿠폰 할인, 카드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평균 2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카드즉시 할인 지급 방식은 일반회원과 유료 회원 4,952명에게 카드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1,024건에게는 쿠팡(주)의 재원을 평균 7만 1,000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사업장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입니다. 법 제2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1회 위반 기준금액 1,500만원에 심결례에 따른 가중 및 감경을 적용하여 최종 과태료를 1,8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KT와 LGU+의 대리점 쿠팡이 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무처 의견에 따라 과태료 제재가 필요합니다. 쿠팡의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건수가 1년에 1만건 정도입니다. 작년 7월부터 쿠팡이 본격적인 대리점 영업을 시작했더니 아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원칙이지만 요즘 대규모 인터넷 플랫폼이 각종 골목상권에 진출하여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무처는 향후 단말기 유통 시장 변화를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사무처의 사실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은 상당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이 유료회원 및 임직원 등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 질서 확립이라는 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포함한 시정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는 추후 추가적인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셨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단말기유통법의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함입니다. 쿠팡은 추가 지원금을 통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혔고 일부 유료회원이나 임직원 등에게 혜택을 누리게 하는 등 차별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역할을 하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다면 가뜰이나 코로나로 힘들어진 중소 유통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며, 상세 시정조치안은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쿠팡(주)은 이번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쿠팡(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과 관련해서 할인쿠폰 제공이나 카드사와의 연계할인은 중소대리점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를 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역시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므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1-57-183~213)**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라>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웅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민원신고 등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별지] 기재 28개 유통점이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특정요금제 사용의무 개별계약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할 것을 명한다.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향후 반복적인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 행위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시정조치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기로 합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의 배경과 다음 페이지 주요경과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은 조사대상 기간인 '19년 7월 1일

~'21년 5월 1일까지 기간 중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된 31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3개점은 폐업하여 28개 유통점만 조사하였습니다. 위반사항입니다. 26개 유통점은 17,833명의 가입자에게 평균 38.3만원을 초과한 과다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개의 유통점은 과다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개 유통점은 25% 선택약정요금 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고,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1개 유통점은 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법성 판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시정명령입니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27개 유통점에 대해 위반행위별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입니다. 과다 지원금 지급 관련 조항을 1회 위반한 25개 유통점은 기준금액(300만원)에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30% 또는 50%를 가중하고, 2회 위반한 1개 대형 유통점은 기준금액(3,000만원)의 50%를 가중하겠습니다. 다만, 24개 유통점은 조사 시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했으므로 기준금액의 30%를 감경하겠습니다. 개별계약 체결 관련 조항을 1회 위반한 2개 판매점은 기준금액(300만원)에 50%를 가중하되 자료제출 협조를 인정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감경하겠습니다. 오인안내·사전승낙 미게시 관련 조항을 위반한 1개 판매점은 위반행위별 각 1회 위반 금액(3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오인안내는 자료제출 협조를 인정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감경하겠습니다. 사실조사를 거부한 1개 판매점은 1회 위반 기준 1,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조사기간이 2019년도 7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2년 전에 벌어진 일을 2년이 지난 연말에 처분하는 것이지요?

○ **윤웅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 **윤웅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그동안 민원신고 건은 이통사를 조사할 때 함께 조사하는 것이 처리가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민원신고 건을 함께 모아 조사해 왔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민원신고 건을 여러 건 모아서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그것이 정도가 있는 것이지, 가령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제기된 민원이라면 2020년도 상반기에는 처리가 다 끝났어야



하는 민원 아십니까? 지금 2021년 말에 2019년도부터 있었던 묵은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 **윤웅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항상 1년에 한번 정도 조사를 했었는데 다음 주에 보고드릴 통신사 조사 건과 함께 처리했는데 이번 조사 건은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때에 비해 많이 늦어진 측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여기에 코로나19를 갖다 대는 것은 제가 보기에 견강부회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의 이러한 사무 처리는 그동안에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너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 보고에도 있지만 이미 조사 나가 보니까 세 군데는 폐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웅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그것은 제가 알기로 끝내 처리되지 않으니까 어떤 민원인이 감사원에 제보를 해서 감사원으로 부터 지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윤웅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 건과 상관없고,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그간 민원은 통신사를 조사할 때 함께 조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관례에 따라 함께 조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 같은 경우 이용자 관점에서 적시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민원신고 건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조사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너무 지연되면 신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통위가 정부기관 인데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상당히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2년 가까운 기간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사실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이지요?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 등과 함께 신고된 사항은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 확보와 처분을 위한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또 사무처가 앞으로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이런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신속한 조사와 안전 상정을 당부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 시정조치 원안에 동의합니다. 시정명령 대상 유통점들은 향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단말기유통법의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은 법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음성적 보조금은 여전하고 소비자 요금 부담 또한 크게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과된 보조금 확대와 같이 단말기 유통법의 추가적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장 자율을 통한 자정능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하고,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진짜 발 빠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조사방식이고 그리고 이것도 위인설관(爲人設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제보를 통해 위반하고 있어서 신고된 것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것을 몽땅 묶어서 거의 2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묶어서 그것도 특정 시기에 31개 유통점을 60일 두 달을 조사합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12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붙임2] 과태료 세부 부과내역 중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태료를 360만원 부과되는 회사가 있고, 450만원도 있고, 720만원도 있고...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360만원은 가중과 감경을 동시에 적용했을 경우 기준금액 300만원에서 저희가 가중하는 것이

50%이고, 또 조사 협조할 경우 감경이 30%입니다. 그 경우에 360만원이 되고, 300만원의 경우에는 가중·감경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450만원은 가중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600만원이 있습니다. 3,600만원의 경우에는 대형 유통점의 기준금액이 1회 위반이 1,500만원이고, 2회 위반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에서 가중·감경을 고려했을 때 3,600만원이 된 상황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다 각자 차이점이 있고 구체적인 차이점에 따라 부과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 윤용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14시 58분】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가.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 (2021-57-180) (비공개)**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2월 29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02분 폐회 】